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정당업자 범위에 ‘중대재해 발생하게 한 자’ 추가〉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492호)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67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92호)	1
2.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79호)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92호)	1
2.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79호)	2
III . 검토의견	3
1. 부정당업자 범위에 ‘중대재해 발생하게 한 자’ 추가(안 제27조제1항 제8호의2 신설)	3

I. 제안경위

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92호)

가. 발 의 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0.

다. 회 부 일 : 2025. 10. 13.

2.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79호)

가.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8.

다. 회 부 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92호)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어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자·부상자 등이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2.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79호)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정당업자 범위에 ‘중대재해 발생하게 한 자’ 추가 (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추가(조승래 의원안)	
		○	부정당업자에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추가(김태년 의원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의 공정성과 적정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성실, 불공정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한 업체를 정부조달절차에서 배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 체결이 금지됨.¹⁾

1)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과거 「국가계약법」 개정(2021.1.5. 개정, 2021.7.6. 시행)을 통해,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바 있음²⁾.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³⁾, 제39조⁴⁾ 또는 제63조⁵⁾에 따른 안전 및

-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2) 2021.7.6. 이전에는 대통령령(2021.7.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에서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규정한 바 있음
- 3)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의미함.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⁶⁾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4)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5)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⁷⁾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1,515건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는 전무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 2024년 산업재해현황(2024년 사고사망자수: 827명, 질병사망자수: 1,271명 / 2023년 사고사망자수: 812명, 질병사망자수 1,204명)

[조달청 제재사유별 제재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계약불이행 (계약조건위반)	144	107	96	125	195	91
적격심사포기	23	13	23	24	18	3
담합입찰	86	59	13	37	3	1
부실·조작 및 부정시공	24	50	41	57	67	13
허위서류제출	5	7	5	13	8	2
계약미체결	15	12	17	9	7	5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8	10	11	30	3	2
뇌물제공	1	1	6	1	-	-
하도급 위반	6	1	2	-	-	1
입찰참가 방해	-	-	-	-	-	-
관련기관 제재요청	-	-	5	-	2	2
기타(인증서불법 사용 등)	-	-	-	4	1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	-	-	-	-
소 계	312	260	219	300	304	120

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제재사유별 제재현황

자료: 조달청, 조승래의원실 보도자료

특히, 현행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중대사고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국가계약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⁸⁾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승래의원안은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김태년의원안은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는 것임.⁹⁾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 요건 및 국가계약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며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서,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8호¹⁰⁾에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규정¹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제재 사유는 현행법상의 제재 사유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각 제재 사유를 통합하여 규정하거나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0)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11)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2명 이상 6명 미만” 경우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위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위반을 포괄하고 ②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8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입찰참가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은 개정안에 대하여 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과도한 중복 제재¹²⁾는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 건설업체의 기업 수주 및 경영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가 급증하며, 특히 대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국책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¹³⁾을 제출하였음.

12) 안전 관련 법령에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사업주 개인에 대해 중복적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13) 2024년 기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 업체 중 28개사, 20위 이내 업체 중 15개사로서, 다수의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우 사고발생 노출이 큰 상황이며,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주요 국책사업 착공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9. 영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	
가.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년
나.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1년 6개월
다.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1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현행	조승래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9. (생략) ② ~ ⑤ (생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u>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60